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22,200,000	30,666,000
일반회계	836,100,000	25,083,000
특별회계	186,100,000	5,583,000
공기업특별회계	121,000,000	3,630,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74,300,000	2,229,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700,000	1,401,000
기타특별회계	65,100,000	1,953,000
주택사업특별회계	640,000	19,2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100,000	453,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84,000	47,5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00,000	150,000
치수사업특별회계	2,410,000	72,3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50,000	43,500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305,000	9,150
청소사업특별회계	36,600,000	1,098,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701,000	51,030
수질개선특별회계	310,000	9,3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74,34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재해 대책비
5. 반환금
6. 선거관련 경비